

□ 2018 KARA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 개정

2017 규정	2018 규정 개정
제1부 / 제2장 국내스포츠규정	
<p>제2조 용어와 정의 38. 파크페미 (Parc Ferme) 파크페미는 특별규정에서 정하는대로 경기참가 팀이 각 차량을 가지고 가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장소다. 차량검차가 행하여지는 경기에 있어서는 파크페미를 마련하는 것은 의무이다.</p>	<p>제2조 용어와 정의 38. 파크페미 (Parc Ferme) 파크페미는 특별규정에서 정하는대로 경기참가 팀이 각 차량을 가지고 가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장소다. 차량검차가 행하여지는 경기에 있어서 파크페미는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조 경기규정 제3.5조 규정의 정통 및 준수 경기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려는 모든 개인, 단체는 KARA에 라이선스의 교부를 신청하고 다음의 조항을 숙지한 후 경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IA의 정관과 국제스포츠규정, 그리고 KARA의 정관과 국내스포츠규정을 숙지한다. 2. 위 사항 및 스포츠 기구의 결정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예외없이 따를 책임을 갖는다. 3. 이러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든 발급된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으며, KARA는 그러한 	<p>제3조 경기규정 제3.5조 규정의 정통 및 준수 경기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려는 모든 개인, 단체는 KARA에 라이선스의 교부를 신청하고 다음의 조항을 숙지한 후 경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IA의 정관과 국제스포츠규정, 그리고 KARA의 정관과 국내스포츠규정을 숙지한다. 2. 위 사항 및 스포츠 기구의 결정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예외없이 따를 책임을 갖는다. 3. 이러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든 발급된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으며, KARA는 그러한

<p>결정 의 이유를 밝힌다.</p> <p>4. 차량이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성능에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변명이 될 수 없다.</p>	<p>결정의 이유를 밝힌다.</p> <p>4. 차량이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성능에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p>
<p>제4조 경기조직</p> <p>제4.4조 경기공인의 신청</p> <p>국내 경기 공인의 신청은 대회 개최 5일전까지 대회공인신청서, 경기 운영 및 기술규정과 특별규정, 공인비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 경기 공인의 신청은 대회 개최 20일 전까지로 한다. KARA가 신청에 대한 비용은 매해 발표하는 규정에 따라 정한다. 공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부칙을 따른다.</p> <p>제4.6조 법률 및 규정의 준수</p> <p>경기는 일반公道 혹은 서킷 또는 양쪽을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단, 조직 위원회가 관계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면, 경기 공인 증명은 발급되지 않는다.</p> <p>1. 경기가 일반교통에 공개되어 있는公道상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경기는 개최 국내에서 시행되어 있는 교통 법규에 근거해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당교통 법규의 위반에 대하여는, 심사 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p> <p>제4.7조 특별규정의 내용</p> <p>경기의 특별규정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p>	<p>제4조 경기조직</p> <p>제4.4조 경기공인의 신청</p> <p>국내 경기 공인의 신청은 대회 개최 5일전까지 대회공인신청서, 대회특별규정(스포츠규정 및 기술규정) 공인비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 경기의 공인 신청은 대회 개최 20일 전까지로 한다. KARA가 신청에 대한 비용은 매해 발표하는 규정에 따라 정한다. 공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부칙을 따른다.</p> <p>제4.6조 법률 및 규정의 준수</p> <p>경기는 일반公道 혹은 서킷 또는 양쪽을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단, 조직위원회가 관계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면, 경기 공인 증명은 발급되지 않는다.</p> <p>1. 경기가 일반교통에 공개되어 있는公道상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경기는 개최 국내에서 시행되어 있는 교통 법규에 근거해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당교통 법규의 위반에 대하여는, 심사 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p> <p>제4.7조 대회특별규정의 내용</p> <p>대회의 특별규정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p>

1. 본 규정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한 조문 (본 규정 제3.4조 참조)
2. 경기의 명칭과 경기 종목 (제2조 용어와 정의 참조)
3. 주최자의 주소와 이름
4. 경기의 장소, 일정
5. 심사위원 명단, 주요 오피셜 명단, 경기장 설명
6. 경기의 세부사항, 경기차량의 세부적인 제한, 선수의 자격과 정원
7. 참가신청 기간
8. 참가비
9. 선수 지명의 최종 기일과 장소, 그 밖의 특별사항
10. 보험에 관한 사항
11. 선수의 교대나 자동차의 교환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것에 따른 특별사항
12. 공식 검차 일정
13. 공식 예선의 일정과 방법
14. 스타트 일시와 방법, 핸디캡의 규정
15. 스타트 시 선수의 반칙에 대한 벌칙 규정
16. 경기중의 연료보급에 관한 규정
17. 항의에 관한 특별사항
18. 연기, 중지에 관한 특별사항 (본 규정 참조)
19. 시상방법
20. 결승 심사방법과 순위 판정방법
21. 경주차 무게측정의 정확한 세부 기준
22. 그 밖의 경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규정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한 조문 (본 규정 제3.4조 참조)
2. 경기의 명칭과 경기 종목 (제2조 용어와 정의 참조)
3. 주최자의 주소와 이름
4. 경기의 장소, 일정
5. 심사위원 명단, 주요 오피셜 명단, 경기장 설명
* 레이스 디렉터 선임시 그 의무와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6. 경기의 세부사항, 경기차량의 세부적인 제한, 선수의 자격과 정원
7. 참가신청 기간
8. 참가비
9. 선수 지명의 최종 기일과 장소, 그 밖의 특별사항
10. 보험에 관한 사항
11. 선수의 교대나 자동차의 교환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것에 따른 특별사항
12. 공식 검차 일정
13. 공식 예선의 일정과 방법
14. 스타트 일시와 방법, 핸디캡의 규정
15. 스타트 시 선수의 반칙에 대한 벌칙 규정
16. 경기중의 연료보급에 관한 규정
17. 항의에 관한 특별사항
18. 경기의 중단, 연기, 중지에 관한 특별사항
19. 결승 심사방법과 순위 판정방법
20. 시상방법
21. 경주차의 안전규정(롤케이지, 소화장치, 전원차단장치, 견인고리등)
22. 경주차 무게측정의 정확한 기준과 부품의 사용, 개조의 범위등
23. 그 밖의 경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 특별규정의 변경

경기의 참가접수가 끝난 후에 특별규정을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KARA와 참가자 전원이 동의했을 경우, 경기 심사위원회가 인정,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결정하게 되었을 때 특별규정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변경된 특별 규정에 대해 드라이버 브리핑 전에 심사와 협의가
되어야 하며 문서로 공식 게시의 의무를 가진다.

제4.9조 공식 프로그램의 내용

경기의 공식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식 프로그램은
게시판과 대회 관련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

1. 본 규정 중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하는 사항 (제3.4조
참고)
2. 주최자와 조직위원의 이름
3. 경기 장소와 일정
4. 경기 시간과 간단한 설명
5. 팀과 선수의 이름, 경기차량에 주어진 식별용 번호 및 표시
6. 핸디캡이 주어지는 경우의 규정
7. 각 경기별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
8. 경기심사위원회의 이름, 경기위원장의 이름
9. 공인 단체의 표기

제4.13조 참가신청서의 내용

참가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 특별규정의 변경

경기의 참가접수가 끝난 후에 특별규정을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KARA와 참가자 전원이 동의했을 경우, 경기~~
~~심사위원회가 인정하여~~ 결정하게 되었을 때 특별규정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변경된 특별 규정에 대해 드라이버 브리핑 전에 심사위원회와
협의를 되어야 하며 문서로 공식 게시의 의무를 가진다.

제4.9조 공식 프로그램의 내용

경기의 공식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식 프로그램은
게시판과 대회 관련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

1. 본 규정 중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하는 사항 (제3.4조
참고)
2. 주최자와 조직위원의 이름
3. 경기 장소와 일정
4. 경기 시간과 간단한 설명
5. 팀과 선수의 이름, 경기차량에 주어진 식별용 번호 및 표시
6. 핸디캡이 주어지는 경우의 규정
7. 각 경기별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
8. 경기심사위원회의 이름, 경기위원장 및 주요 오피셜의 이름
9. 공인 단체의 표기

제4.13조 참가신청서의 내용

참가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 규정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한 사항. (제3.4조 참고)
2. 선수, 경기참가 팀, 경기 참가자의 이름과 라이선스 번호
3. 참가신청은 참가자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으나 서명은 반드시 선수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
4. 팀, 선수, 경기탑승자 및 피트에 근무하는 팀 관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5. 본 규정 중 다음 조항 (경기참가자, 선수, 경기탑승자 및 피트요원의 계약문의 서명)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 및 서명은 신청서와 별도 용지에 하여도 된다.
6. 특별규정에 따라 규정된 그 밖의 신청서 기입사항

제4.14조 경기참가 팀, 선수, 경기탑승자 및 마샬, 오피셜의 참가서약

1. 경기참가 팀 관계자, 선수, 경기탑승자 및 마샬, 오피셜은 경기참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약을 한다.

“나는 이 대회와 특별규정과 국제스포츠규정, 국내스포츠규정에 동의합니다. 나는 경기 참가에 따라 관련되어 일어난 사망, 부상, 그 밖의 사고에 대해서 절대로 KARA나 주최자, 조직위, 오피셜에게 경기에 관한 비난, 책임추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사고가 상기 주최 단체와 대회 관계자의 실수가 원인이 되었더라도 변함 없습니다. 또 선수의 참가종목에 관한 표준능력을 가지고 참가차량도 코스와 스피드에 관해 적격하고 경기가 가능한 것을 맹세합니다.”

2. 이에 붙여 선수는 다음 양식의 서약문에 서명하여야 한다.

“나는 이 경기에서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전에서 지장을 주는 신체적 결함이

1. 본 규정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한 사항. (제3.4조 참고)
2. 선수, 경기참가 팀, 경기 참가자의 이름과 KARA 라이선스 번호
3. 참가신청은 참가자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으나 서명은 반드시 선수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
4. 팀, 선수, 경기탑승자 및 피트에 근무하는 팀 관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5. 본 규정 중 다음 조항 (경기참가자, 선수, 경기탑승자 및 피트요원의 계약문의 서명)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 및 서명은 신청서와 별도 용지에 하여도 된다.
6. 특별규정에 따라 규정된 그 밖의 신청서 기입사항

제4.14조 경기참가 팀, 선수, 경기탑승자 및 마샬, 오피셜의 참가서약

1. 경기참가 팀 관계자, 선수, 경기탑승자 및 마샬, 오피셜은 경기참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약을 한다.

“나는 이 대회와 특별규정과 국제스포츠규정, 국내스포츠규정에 동의합니다. 나는 경기 참가에 따라 관련되어 일어난 사망, 부상, 그 밖의 사고에 대해서 절대로 KARA나 주최자, 조직위, 오피셜에게 경기에 관한 비난, 책임추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사고가 상기 주최 단체와 대회 관계자의 실수가 원인이 되었더라도 변함 없습니다. 또 선수의 참가종목에 관한 표준능력을 가지고 참가차량도 코스와 스피드에 관해 적격하고 경기가 가능한 것을 맹세합니다.”

2. 이에 붙여 선수는 다음 양식의 서약문에 서명하여야 한다.

“나는 이 경기에서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전에서 지장을 주는 신체적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KARA에 알리고, 신체장애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교부 받지 않는 한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전항 1,2에 규정한 서약문서에 18세 미만의 참가신청자의 경우 당사자의 부모와 보호자가 신청서 및 별도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21조 참가접수 명단의 공포

조직위원회는 공식 참가접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경기참가 팀, 선수의 이름을 공식 프로그램에 넣어 공포하면 안 된다. 더구나 조건부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그 점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가접수 명단의 발표는 참가 신청 마감일 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하여야 한다.

있을 경우 이를 KARA와 대회 주최자에 알리고, 신체장애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교부 받지 않는 한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전항 1,2에 규정한 서약문서에 18세 미만의 참가신청자의 경우 당사자의 부모와 보호자가 신청서 및 별도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21조 참가접수 명단의 공포

조직위원회는 공식 참가접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경기참가 팀, 선수의 이름을 공식 프로그램에 넣어 공포하면 안 된다. 더구나 조건부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그 점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야 한다. 참가접수 명단의 발표는 참가 신청 마감일 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스타트 및 히트

제6.3조 롤링 스타트

롤링 스타트란 시간 측정이 개시된 순간에서 차량이 이미 주행상태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

롤링 스타트는 스타트신호가 나오기 전에 페이스카에 의해 유도되어 진다. 별도의 경기 규정이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이 때 유도차를 제외한 선두의 차량이 스타트라인을 지나는 순간에 스타트가 성립된다.

제6.4조 스탠딩스타트

스탠딩스타트란 스타트 신호가 나는 순간에서 차량이 정지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스타트 및 히트

제6.3조 롤링 스타트

롤링 스타트란 시간 측정이 개시된 순간에서 차량이 이미 주행상태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

롤링 스타트는 스타트신호가 나오기 전에 **세이프티카파이스카**에 의해 유도되어 진다. 별도의 경기 규정이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이 때 유도차를 제외한 선두의 차량이 스타트라인을 지나는 순간 **또는 별도의 신호가 제시되는 시점에** 스타트가 성립된다.

제6.4조 스탠딩스타트

스탠딩스타트란 스타트 신호가 나는 순간에서 차량이 정지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스탠딩스타트에 의한 기록챌린지는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스타트라인을 통과하는 순간에 계측장치를 작동시키게 되는 차량의 부분이 그 스타트라인보다 10cm 후방에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그 차량의 엔진은 스타트에 앞서 시동시킨 것으로 한다.
2. 스탠딩스타트에 의한 그외의 경기는 스타트에 앞서 엔진을 시동시켜 두던가 혹은 정지하여 두던가에 관하여 특별규정으로 규정하여 두어야 한다.
3. 단독 스타트 또는 동시 스타트의 차량에 대하여:
 - 자동계측장치에 의하여 시간 측정이 행하여질 경우 그 차량(들)은 스탠딩스타트의 기록 챌린지에서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차량의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자동계측장치에 의해 시간 측정이 행하여지지 않거나 시계에 의한 시간 측정이 행하여 지는 경우 그 차량(들)은 프런트 휠의 접지부분이 스타트 라인 위에 있는 위치로 차량의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스타트라인 위치에 관계없이 특별규정으로 각 경기참가자의 스타트 위치를 규정한 경우라도 시간 측정은 스타트의 신호가 난 순간에 시작된다. 이 때 서킷의 경우 각 경기참가자의 스타트 위치에 관계 없이 1랩째부터 각 차량이 콘트롤라인을 지날 때 계측을 한다.
5. 스타팅 그리드의 최종발표가 있는 후에는 스타트 불가한 차량의 그리드는 비워둔 채로 두고 그 외의 경기 참가차량에게 공표된 그리드의 위치는 변경할 수 없다.

1. 스탠딩스타트에 의한 기록 **은챌린지는**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스타트라인을 통과하는 순간에 계측장치를 작동시키게 되는 차량의 부분이 그 스타트라인보다 10cm 후방에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그 차량의 엔진은 스타트에 앞서 시동시킨 것으로 한다.
2. 스탠딩스타트에 의한 **구와의** 경기는 스타트에 앞서 **엔진의 시동과 정지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독 스타트 또는 동시 스타트의 차량에 대하여:
 - 자동계측장치에 의하여 시간 측정이 행하여질 경우 그 차량(들)은 스탠딩스타트 **의 기록 챌린지에서**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차량의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자동계측장치에 의해 시간 측정이 행하여지지 않거나 시계에 의한 시간 측정이 행하여 지는 경우 그 차량(들)은 프런트 휠 **의 접지부분이** 스타트 라인 위에 있는 위치로 차량의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스타트라인 위치에 관계없이 특별규정으로 각 경기참가자의 스타트 위치를 규정한 경우라도 시간 측정은 스타트의 신호가 난 순간에 시작된다. 이 때 서킷의 경우 각 경기참가자의 스타트 위치에 관계 없이 1랩째부터 각 차량이 **콘트롤계측** 라인을 지날 때 계측을 한다.
5. 스타팅 그리드의 최종발표가 있는 후에는 스타트 불가한 차량의 그리드는 비워둔 채로 두고 그 외의 경기 참가차량에게 공표된 그리드의 위치는 변경할 수 없다.

제6.5조 스타터(Starter)의 명령

선수와 출전차량은 스타트 깃발이 올려지는 순간부터 내려지는 순간까지 스타터의 명령하에 놓여진다. 스타트 깃발이 올려지고 내려짐은 다른 적당한 신호를 동반하여도 되고 신호등으로도 가능하다.

제6.6조 반칙 스타트에 대한 벌칙

스타터의 명령하에 있는 선수가 소정의 스타트 신호 이전에 제위치에서 전진한 경우 부정출발이 된다. 동시 스타트의 경우는 부정출발을 한 운전자는 어느 경우든 그 사람이 그 경기코스를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에 대하여 벌칙이 가산된다. 그 벌칙은 곧바로 그 선수의 피트에 통보되어야 한다.

특별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기심사위원회는 본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범위 내에서 앞서 밝힌 벌칙을 가중하거나 다른 벌칙을 추가할 수 있다.

제6.7조 스타트 오피셜

조직위원회는 스타트를 감시하기 위하여 한사람 또는 몇 명의 오피셜을 지명할 수 있다. 스타트 오피셜은 반칙 스타트를 확인했을 경우 즉시 그것을 경기위원장에 보고한다.

제8조 경기참가자와 선수

제8.2조 라이선스의 발급

KARA는 FIA 국제 라이선스 자격증을 발급하는 권한을 가지며, 스스로 정한 양식에 의한 국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5조 스타터(Starter)의 명령

선수와 출전차량은 스타트 깃발이 ~~올려지는 순간부터 내려지는 순간까지 스타터의 명령하에 놓여진다.~~ **올려지거나 내려질 때 스타트 할 수 있다.** 스타트 깃발이 올려지고 내려짐은 다른 적당한 신호를 동반하여도 되고 신호등으로도 가능하다.

제6.6조 반칙 스타트에 대한 벌칙

~~스타터의 명령하에 있는 선수가 소정의~~ 스타트 신호 이전에 제위치에서 전진한 경우 부정출발이 된다. ~~동시 스타트의 경우는~~ 부정출발을 한 운전자는 어느 경우든 그 사람이 그 경기코스를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에 대하여 벌칙이 가산된다. 그 벌칙은 곧바로 그 선수의 피트에 통보되어야 한다.

특별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기**심사위원회는 본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범위 내에서 앞서 밝힌 벌칙을 가중하거나 다른 벌칙을 추가할 수 있다.

제6.7조 스타트 오피셜

조직위원회는 스타트를 감시하기 위하여 한사람 또는 몇 명의 오피셜을 지명할 수 있다. 스타트 오피셜은 반칙 스타트를 확인했을 경우 즉시 **그것을** 경기위원장에 보고한다.

제8조 경기참가자와 선수

제8.2조 라이선스의 발급

KARA는 FIA 국제 라이선스 자격증을 발급하는 권한을 가지며, **스스로** 일정한 양식에 의한 국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p>제8.12조 경기참가자, 선수, 그 외 관계자의 책임</p> <p>경기참가팀은 지명한 선수, 탑승자, 팀 관계자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국제스포츠 규정, 본 규정, 경기 특별규정, 공식통지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p> <p>경기참가자와 팀은 대회에서 얻은 정보를 대회의 명예훼손이나 비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별도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p>	<p>제8.12조 경기참가자, 선수, 그 외 관계자의 책임</p> <p>경기참가팀은 지명한 선수, 탑승자, 팀 관계자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국제스포츠 규정, 본 규정, 경기 특별규정, 공식통지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p> <p>경기참가자와 팀은 대회에서 얻은 정보를 대회의 명예훼손이나 비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별도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p>
<p>제9조 자동차</p> <p>제9.6조 허위 광고</p> <p>경기참가자나 단체가 경기나 기록의 광고를 할 경우는 발표된 성적의 일반조건과 특별조건, 경기와 기록의 성질, 차량의 분류, 클래스 구분, 취득한 성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중에게 이의를 갖게 하는 성질이나 과대광고는 그 광고의 해당 경기참가자나 단체에 대하여 본 규정 제 11 조의 벌칙을 과할 수 있다.</p>	<p>제9조 자동차</p> <p>제9.6조 허위 광고</p> <p>경기참가자나 단체가 경기나 기록의 광고를 할 경우는 발표된 성적의 일반조건과 특별조건, 경기와 기록의 성질, 차량의 분류, 클래스 구분, 취득한 성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중에게 이의를 갖게 하는 성질이나 과대광고는 그 광고의 해당 경기참가자나 단체에 대하여 본 규정 제11조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10조 오피셜</p> <p>제10.1조 오피셜의 구성</p> <p>다음은 오피셜의 종류이며, 각각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p> <p>각 위원장은 보조요원의 배치, 임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대한 돕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the stewards) - 경기위원장 (the clerk of Course) - 레이스 디렉터 (the race director) - 경기 사무국장 (the secretary of the Event) - 기록위원장 및 요원 (timekeepers) - 기술위원장 및 요원 (scrutineers) 	<p>제10조 오피셜</p> <p>제10.1조 오피셜의 구성</p> <p>다음은 오피셜의 종류이며, 각각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p> <p>각 위원장은 보조요원의 배치, 임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대한 돕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the stewards) - 경기위원장 (the clerk of course) - 레이스 디렉터 (the race director) - 경기 사무국장 (the secretary of the Event) - 기록 위원장 및 요원 (timekeepers) - 기술 위원장 및 요원 (scrutineers)

- 피트 위원장 및 요원 (pit marshals)
- 패독 위원장 및 요원 (paddock marshals)
- 코스 위원장 및 요원 (track or road marshals)
- 안전위원장 및 요원 (emergency coordinator)
- 의료위원장 및 구급대원

제10.3조 경기임원의 조직구성

1. 최소 필요 임원

경기는 적어도 경기심사위원 3명과 경기위원장 1명을 두고 시간 측정에 의한 결정이 행해지는 경우 1명 이상의 기록위원을 두어야 한다.

2. 레이스 디렉터

각각의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에서 경기 전 기간 동안 레이스 디렉터를 임명할 수 있다. 레이스 디렉터를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레이스 디렉터의 의무와 권한을 관련 경기 규정 중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9조 심사위원회의 책임

1. 심사위원은 경기의 조직이나 경기 주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으며, 주최와 연관된 어떠한 운영 임무로 수행해서는 안된다.

제10.11조 경기심사위원회의 보고에 기준한 KARA의 권한

KARA는 경기심사위원회의 경기 결과에 대한 보고가 공정하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항의나 항소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상황 및 관계자를 조사하여 시정할 권한을 가진다.

- 피트 위원장 및 요원 (pit marshals)
- 패독 위원장 및 요원 (paddock marshals)
- 코스 위원장 및 요원 (track or road marshals)
- 안전 위원장 및 요원 (emergency coordinator)
- 의료위원장 및 구급대원(**medical**)

제10.3조 경기임원의 조직구성

1. 최소 필요 임원

경기는 적어도 경기심사위원 3명과 경기위원장 1명을 두고 시간 측정에 의한 결정이 행해지는 경우 1명 이상의 기록위원을 두어야 한다.

2. 레이스 디렉터

각각의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에서 경기 전 기간 동안 레이스 디렉터를 임명할 수 있다. 레이스 디렉터를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레이스 디렉터의 의무와 권한을 관련 경기 규정 중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9조 심사위원회의 책임

1. 심사위원은 경기의 조직이나 경기 주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으며, 주최와 연관된 어떠한 운영 임무도 수행해서는 안된다.

제10.11조 경기심사위원회의 보고에 기준한 KARA의 권한

KARA는 경기심사위원회의 경기 결과에 대한 보고가 공정하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항의나 항소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상황 및 관계자를 조사하여 시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10.12조 경기위원장의 임무

제10.12조 레이스 디렉터의 임무

1. 레이스 디렉터는 각 챔피언십, 컵,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전체 기간 동안에 걸쳐서 임명될 수 있다.
2. 레이스 디렉터가 임명될 경우 그 임무와 책임이 아래에 제시된 것과 다를 경우 대회 특별 규정에 명시한다.
3. 레이스 디렉터는 항상 경기위원장과 협의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4. 레이스 디렉터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며 경기위원장은 레이스 디렉터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5. 일정표를 준수하는 연습주행과 예선의 통제, 그리고 레이스 디렉터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면 국제스포츠규정과 경기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제청하여 일정표를 변경할 수 있다.
6.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때, 연습주행 또는 레이스의 중단, 이후 재시작 절차에 대한 진행 (사전에 심사위원회와 협의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7. 스타트의 진행
8. 세이프티 카의 사용

제10.13조 경기위원장의 임무

1. 경기위원장은 경기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고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2. 여러 개의 경기를 포함하는 경우 각 경기마다 별개의 경기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경기위원장은 공식 프로그램에 따라 경기의 운영 책임을 진다.
4. 치안의 책임을 갖고 특히 공공안전을 위해 파견된 행정당국과 연락하여 경기장내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
5. 모든 오피셜이 각자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재자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6. 모든 오피셜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도록 한다.
7. 참가의 자격을 갖지 않는 경기참가 팀 또는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8. 각각의 자동차가 프로그램에 명시된 식별번호를 부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9. 지명 받은 선수가 해당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자동차를 종목과 클래스에 따라 통제한다.
10. 자동차를 정해진 순서대로 스타트라인에 정렬하여 출발시킨다.

1. 경기위원장은 경기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고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2. 여러 개의 경기를 포함하는 경우 각 경기마다 **별도**의 경기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경기위원장은 공식 프로그램에 따라 경기의 운영 책임을 진다.
4. 치안의 책임을 갖고 특히 공공안전을 위해 파견된 행정당국과 연락하여 경기장내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
5. 모든 오피셜이 각자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재자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6. 모든 오피셜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도록 한다.
7. 참가의 자격을 갖지 않는 경기참가 팀 또는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8. 각각의 자동차가 프로그램에 명시된 식별번호를 부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9. 지명 받은 선수가 해당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자동차를 종목과 클래스에 따라 통제한다.
10. 자동차를 정해진 순서대로 스타트라인에 정렬하여 출발시킨다.

11.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프로그램 변경 제안과 경기참가자의 부정행위, 규정위반, 경기참가자의 이의신청의 제안을 행한다.
12.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경기심사위원회에 전달한다.
13. 기록위원, 기술위원, 코스위원의 보고서와 순위의 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14. 담당한 경기에 관하여 최종보고서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거나 경기 사무국장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경기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10.13조 경기 사무국장의 임무

1. 경기 사무국장은 경기의 조직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모든 오피셜이 각각의 임무에 정통하고 필요한 부대적 자료를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필요하다면 각 경기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때 경기위원장을 보좌하여야 한다

11.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프로그램 변경 제안과 경기참가자의 부정행위, 규정위반, 경기참가자의 이의신청의 제안을 행한다.
12.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경기심사위원회에 전달한다.
13. 기록위원, 기술위원, 코스위원의 보고서와 순위의 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14. 담당한 경기에 관하여 최종보고서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거나 경기 사무국장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경기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10.14조 경기 사무국장의 임무

1. 경기 사무국장은 경기의 조직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오피셜을 모집하고 경기위원장과 협의하여 배치한다. 또한 오피셜에게 필요한 정보와 장비, 물자등의 제공을 담당한다.
3. 모든 오피셜이 각각의 임무에 정통하고 필요한 부대적 자료를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은 각 경기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때 경기위원장을 보좌하여야 하며 각 보고서에 정확한 서명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5. 참가 엔트리 및 모든 대회 문서를 관리하며 대회결과를 게시하고 발표한다.

제10.14조 기록위원장의 임무

기록위원장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의 개시와 함께 경기위원장의 필요한 지시를 부여 받는다.
2. 경기위원장에게 지시 받은 경우 스타트의 신호를 한다.
3. 계측은 KARA에 의하여 승인된 계측장치만을 사용하고 1000분의 1초까지의 계시를 필요로 한다.
4. 각 차량이 코스를 완주하여 얻은 기록을 확정한다.
5. 자기의 책임하에 기록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다른 모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기록챌린지 내지 테스트의 경우는 KARA에 제출한다.)
6. 기록위원장은 심사위원이나 KARA의 요구가 있으면 경기심사위원이나 KARA에 대해 계측 기록 서류의 원본을 제출한다.
7. 심사위원과 경기위원장의 지시가 없는 한 심사위원과 경기위원장 이외의 사람에게 공식기록이나 성적을 통보하지 않는다.

6. 대회 스케줄을 작성하고 배포한다.

7. 시상식의 진행을 담당한다.

제10.15조 기록위원장의 임무

기록위원장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의 개시와 함께 경기위원장의 필요한 지시를 부여 받는다.
2. 경기위원장에게 지시 받은 경우 스타트의 신호를 한다.
3. 계측은 KARA에 의하여 승인된 계측장치만을 사용하고 1000분의 1초까지의 계시를 필요로 한다.
4. 각 차량이 코스를 완주하여 얻은 기록을 확정한다.
5. 자기의 책임하에 기록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다른 모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기록챌린지 내지 테스트의 경우는 KARA에 제출한다.)
6. 기록위원장은 심사위원이나 KARA의 요구가 있으면 ~~경기심사위원이나 KARA에 대해~~ 계측 기록 서류의 원본을 제출한다.
7. 심사위원과 경기위원장의 지시가 없는 한 심사위원과 경기위원장 이외의 사람에게 공식기록이나 성적을 통보하지 않는다.

제10.15조 기술위원장의 임무

기술위원장은 자동차의 기계장치에 관한 모든 검차를 담당한다.

기술위원장은 경기위원장과 함께 자동차의 중량과 차체, 부속품의 치수, 차량의 규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 안전장비, 경기참가 팀, 선수의 서류(선수증, 운전면허증, 보험에 관한 서류 등)에 관한 모든 점검을 담당한다.

1. KARA나 조직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경기 개시 전, 경기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경기 개최 중, 종료 후 그 검사를 실시한다.
2. KARA에서 지정 또는 승인한 검차 장비를 사용한다.
3. 검차의 공식결과를 KARA, 조직위원회, 심사위원회, 경기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4. 기술위원장은 그 책임하에 검차보고서를 작성, 서명하여 3항에 명시된 자에게 제출한다.

제10.16조 피트위원장의 임무

1. 피트 위원은 경기 진행 중에 있어서 경기참가 팀과 선수가 행하는 자동차의 관리 및 수리에 관한 모든 작업을 감독하고, 규정 및 특별규정의 해당 항목을 준수하게 하는 임무를 가진다.

2. 피트 위원장은 경기위원장의 지휘 하에 경기참가 팀 또는 선수가 행한 모든 위반 행위를 즉시 경기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6조 기술위원장의 임무

기술위원장은 자동차의 기계장치에 관한 모든 검차를 담당한다.

기술위원장은 경기위원장과 함께 자동차의 중량과 차체, 부속품의 치수, 차량의 규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 안전장비, 경기참가 팀, 선수의 서류(선수증, 운전면허증, 보험에 관한 서류 등)에 관한 모든 점검을 담당한다.

1. ~~KARA나 조직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KARA나 경기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경기 개시 전, 경기 개최 중, 종료 후 그 검사를 실시한다.
2. KARA에서 지정 또는 승인한 검차 장비를 사용한다.
3. 검차의 공식결과를 KARA, 조직위원회, 심사위원회, 경기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4. 기술위원장은 그 책임하에 검차보고서를 작성, 서명하여 3항에 명시된 자에게 제출한다.

제10.17조 피트위원장의 임무

1. 피트 위원은 경기 진행 중에 있어서 경기참가 팀과 선수가 행하는 자동차의 관리 및 수리에 관한 모든 작업을 감독하고, 규정 및 특별규정의 해당 항목을 준수하게 하는 임무를 가진다.

2. 피트 위원장은 경기위원장의 지휘 하에 경기참가 팀 또는 선수가 행한 모든 위반 행위를 즉시 경기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피트 위원장은 각 경기의 종료 후 주어진 지시에 따라 경기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보고서를 통하여 임무에 관한 보고를 행하여야 한다.

제10.17조 코스위원장과 트랙 마샬(코스요원)의 임무

1. 트랙 마샬은 경기심사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에 의하여 정해진 코스상의 포스트에 위치하여야 한다.
2. 트랙 마샬은 경기 개시 후 경기위원장의 지휘하에 각자의 포스트가 관찰하는 구역에 생기는 모든 정보를 무전, 보고서 등을 이용해서 곧바로 경기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플래그 마샬은 코스 상에 깃발을 이용한 신호를 담당하며 트랙마샬을 겸할 수 있다.
4. 각 경기 종료 후 트랙 마샬은 자기가 확인한 사고에 대하여 문서에 의한 보고를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코스위원장은 트랙마샬의 배치, 근무 환경, 무전에 대한 전체적 관리를 한다.

제10.18조 안전위원장의 임무

1. 안전위원장은 구난, 소방, 의료 팀에 대한 전체 책임과 총괄을 맡는다. 이는 각 팀의 조직, 장비 편성, 배치를 포함하며, 경기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 대응 팀을 운영한다.

3. 피트 위원장은 각 경기의 종료 후 주어진 지시에 따라 경기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보고서를 통하여 임무에 관한 보고를 행하여야 한다.

제10.18조 코스위원장과 트랙 마샬(코스요원)의 임무

1. 트랙 마샬은 경기심사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에 의하여 정해진 코스상의 포스트에 위치하여야 한다.
2. 트랙 마샬은 경기 개시 후 경기위원장의 지휘하에 각자의 포스트가 관찰하는 구역에 생기는 모든 정보를 무전, 보고서 등을 이용해서 곧바로 경기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플래그 마샬은 코스 상에 깃발을 이용한 신호를 담당하며 트랙 마샬을 겸할 수 있다.
4. 각 경기 종료 후 트랙 마샬은 자기가 확인한 사고에 대하여 문서로 ~~에~~**의한 보고를**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코스위원장은 트랙 마샬의 배치, 근무 환경, 무전에 대한 전체적 관리를 한다.

제10.19조 안전위원장의 임무

1. 안전위원장은 구난, 소방, 의료 팀에 대한 전체 책임과 총괄을 맡는다. 이는 각 팀의 조직, 장비 편성, 배치를 포함하며, 경기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 대응 팀을 운영한다.

<p>2. 경찰 및 소방 당국, 지정 병원을 비롯한 유관 협조 기관 관리 및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p> <p>제10.19조 특별 오피셜의 임무 경기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병원, 소방서, 서킷에서 파견한 인력을 특별 오피셜로 간주한다. 특별 오피셜은 해당위원장 또는 경기위원장의 지시를 받을 수</p>	<p>2. 경찰 및 소방 당국, 지정 병원을 비롯한 유관 협조 기관 관리 및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p> <p>제10.20조 특별 오피셜의 지정 경기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병원, 소방서, 서킷에서 파견한 인력이나 선수 출신으로서 참가자의 주행에 관해 조언하는 인력(Driving Standard Adviser)을 특별 오피셜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 오피셜은 레이스 디렉터 또는 경기위원장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p>
<p>제11조 벌칙 제11.1조 규정위반 본 규정에 명시된 모든 반칙과 함께 다음 행위도 본 규정의 위반이 된다.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거나 받은 행위 및 이와 관련된 미수 행위 2. 해당 경기에 참가자격이 없는 선수이거나 부적당한 차량으로 경기에 참가한 행위 3. 경기나 모터스포츠 일반에 관련한 부정행위 4. KARA나 모터스포츠 일반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p>제11.2조 벌칙 1. 주최자, 경기참가 팀, 선수, 탑승자, 미캐닉, 팀 관계자, 오피셜 그 외의 라이선스를 소지한 누구라도 본 규정과 부칙, 경기 특별규정과 고시, 경기 공인 등을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p>	<p>제11조 벌칙 제11.1조 규정위반 본 규정에 명시된 모든 반칙과 함께 다음 행위도 본 규정의 위반이 된다.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거나 받은 행위 및 이와 관련된 미수 행위 2. 해당 경기에 참가자격이 없는 선수이거나 부적당한 차량으로 경기에 참가한 행위 3. 경기나 모터스포츠 일반에 관련한 부정행위 4. KARA나 모터스포츠 일반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p>제11.2조 벌칙 1. 주최자, 경기참가 팀, 선수, 탑승자, 미캐닉, 팀 관계자, 오피셜 그 외의 라이선스를 소지한 누구라도 본 규정과 부칙, 경기 특별규정과 고시, 경기 공인 등을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p>

2. 벌칙은 경기심사위원회 및 KARA의 상벌위원회에 의해 제11.3조에 의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

3. 심사 위원회의 결정이 안전 혹은 경기참가 팀과 선수의 부정참가에 관한 경우 또는 동일경기 가 팀과 선수가 동일 경기 중에 추가 위반함에 의해 실격 처분이 처해져야 할 경우에는 즉시 외시될 수 있다.

4. 단, 경기참가 팀과 선수가 상기 이외의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구제조치로서 재의 적용은 일시적으로 유보한다. 특히, 이 경기의 심사 결정으로 인한 이후의 경기 참가에 항을 끼치는 모든 핸디 캡 규정의 적용 결정은 유보된다.

5. 항소에 대한 유예효과는 그 경기참가 팀과 선수가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으며 공식 순위에도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6. 세계 도핑 방지 운동 추진으로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A에 정하는 FIA 안티 도핑 규정 안에 련되어진 벌칙을 적용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44호 금지목록 개정에 의한 금지약물 위반 행위는 본 규칙 제11.3조 규정에 의거해 벌칙을 적용한다.

제11.7조 벌금의 지불기한

1. 벌금은 통보를 받은 지 5일 이내에 KARA에 지불하여야 한다.

2. 벌칙은 경기심사위원회 및 KARA의 상벌위원회에 의해 제11.3조에 의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

3. 심사 위원회의 결정이 안전 혹은 경기참가 팀과 선수의 부정참가에 관한 경우 또는 동일경기 가 팀과 선수가 동일 경기 중에 추가 위반함에 의해 실격 처분이 처해져야 할 경우에는 즉시 **제**외시될 수 있다.

4. 단, 경기참가 팀과 선수가 상기 이외의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구제조치로서 **재**의 적용은 일시적으로 유보한다. 특히, 해당 **경기 심사위원회의 아 경기의 심사** 결정으로 인한 이후의 경기 참가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핸디 캡 규정의 적용 결정은 유보된다.

5. 항소에 대한 유예효과는 그 경기참가 팀과 선수가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으며 공식 순위에도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6. 세계 도핑 방지 운동 추진으로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A에 정하는 FIA 안티 도핑 규정 안에 **관**련되어진 벌칙을 적용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44호 금지목록 개정에 의한 금지약물 위반 행위는 본 규칙 제11.3조 규정에 의거해 벌칙을 적용한다.

제11.7조 벌금의 지불기한

1. 벌금은 통보를 받은 지 5일 이내에 **대회사무국을 통해** KARA에 지불하여야 한다.

2. 지불이 늦어지는 경우는 벌금미납 기간 중 출장 정지 처분이 따른다.

3. 벌금은 KARA를 통해 대회 운영 및 모터스포츠 발전에 사용한다.

제11.8조 제외 및 실격 (Exclusion)

1. 제외 및 실격의 선고는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 1) 제외는 그 대상이 된 자가 1경기 이상 참가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다.
- 2) 실격은 그 대상이 된 자가 참가한 1경기 이상의 결과가 취소되는 것이다.

2. 제외 및 실격을 받으면 이미 지불되어 있는 참가비는 주최자에 몰수된다.

제11.9조 출장정지 (Suspension)

1. 출장정지는 중대한 반칙에 대하여 KARA와 FIA 만 선고할 수 있다.

2. 출장정지는 그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모든 경기에 참가하는 권리를(벌칙의 적용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KARA의 관할 영역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대상으로 삼는 국내적 적용의 우와, FIA 총괄 아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대상으로 삼는 국제적 적용의 경우가 있다.

3. 출장정지가 내려지면 그 기간 동안 경기에 대하여 이미 참가 등록한 것은 무효가 되고 지불한 참가비는 주최자에 몰수된다.

제11.11조 출장정지의 효력

2. 지불이 늦어지는 경우는 벌금미납 기간 중 출장 정지 처분이 따른다.

3. 벌금은 KARA에 의해 ~~를 통해 대회 운영 및~~ 모터스포츠 발전에 사용한다.

제11.8조 제외 및 실격 (Exclusion)

1. 제외 및 실격의 선고는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 1) 제외는 그 대상이 된 자가 1경기 이상 참가가~~로부터~~ 금지되는 것이다.
- 2) 실격은 그 대상이 된 자가 참가한 1경기 이상의 결과가 취소되는 것이다.

2. 제외 및 실격을 받으면 이미 지불되어 있는 참가비는 주최자에 몰수된다.

제11.9조 출장정지 (Suspension)

1. 출장정지는 중대한 반칙에 대하여 KARA와 FIA 만 선고할 수 있다.

2. 출장정지는 그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모든 경기에 참가하는 권리를(벌칙의 적용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KARA의 관할 영역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대상으로 삼는 국내적 ~~적용의~~ 경우와, FIA 총괄 아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대상으로 삼는 국제적 ~~적용의~~ 경우가 있다.

3. 출장정지가 내려지면 그 기간 동안 경기에 대하여 이미 참가 등록한 것은 무효가 되고 지불한 참가비는 주최자에 몰수된다.

제11.11조 출장정지의 효력

KARA 에 의해 선고된 출장정지 처분에 대해서 그 효력은 KARA 의 관할 영역 내에 한정된다. 단, KARA 가 그 벌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KARA 는 FIA 에 그 취지를 통보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FIA 는 그 취지를 다른 모든 ASN 에 대하여 통지 한다. 각각의 ASN 은 즉시 그 출장정지를 등록하며 이를 통하여 해당국 이외 에서의 출장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제11.20조 벌칙의 사면

KARA는 만약 적절하다고 인정한다면 본 규정에 기준하여 부과한 자격상실처분의 기간을 경감, 자격 상실처분의 면제를 할 수 있다.

KARA에 의해 선고된 출장정지 처분에 대해서 그 효력은 KARA의 관할 영역 내에 한정된다. 단, KARA가 그 벌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KARA는 FIA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는 것을 필요로~~ 하고 FIA는 그 취지를 다른 모든 ASN에 대하여 통지 한다. 각각의 ASN은 즉시 그 출장정지를 등록하며 이를 통하여 해당국 이외 에서의 출장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제11.20조 벌칙의 사면

KARA는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규정에 기준하여 부과한 자격상실처분의 기간을 경감, 자격 상실처분의 면제를 할 수 있다.

제12조 항의

제12.1조 항의권

1. 경기참가자가 만약 주최자, 임원, 다른 경기참가자나 선수, 경기관계자의 결정, 행위, 과오에 의해 자신이 부당하게 처우됐다고 판단할 경우는 항의할 권리를 갖는다.
2. 임무 수행중인 오피셜은 항의가 제출된 경우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두 명 이상의 복수의 경기 참가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관계된 경기참가자 전원에게 각각 항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 항의 기한

1. 경기참가 팀 혹은 선수의 참가 접수에 대한 항의 혹은 코스의 거리에 대한 항의는 공식 검차 후 2시간이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항의

제12.1조 항의권

1. 경기참가자가 **만약** 주최자, 임원, 다른 경기참가자나 선수, 경기관계자의 결정, 행위, 과오에 의해 자신이 부당하게 처우됐다고 판단할 경우는 항의할 권리를 갖는다.
2. 임무 수행중인 오피셜은 항의가 제출된 경우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두 명 이상의 복수의 경기 참가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관계된 경기참가자 전원에게 각각 항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 항의 기한

1. 경기참가 팀 혹은 선수의 참가 접수에 대한 항의 혹은 코스의 거리에 대한 항의는 공식 검차 후 2시간이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핸디캡에 대한 항의 또는 히트 편성에 대한 항의는 늦어도 경기 스타트 1시간 전 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3. 경기 중에 행하여진 반칙에 대한 항의, 차량규정위반에 대한 항의, 경기 종료 후에 결정된 순위에 대한 항의는 늦어도 그 경기 순위의 잠정 발표 후 30분 이내에 정해진 금액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4. 주최자가 공식 결과를 사전 통보대로 게시할 수 없는 경우 순위 관련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발표해야 한다.
- 5. 심사위원회는 항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누구의 진술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 6. 심사위원회는 항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누구의 진술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 2. 핸디캡에 대한 ~~항의 또는 히트 편성에 대한~~ 항의는 늦어도 경기 스타트 1시간 전 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3. 대회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히트 또는 결승 구성 발표 후 30분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4. 경기 중에 행하여진 반칙에 대한 항의, 차량규정위반에 대한 항의, 경기 종료 후에 결정된 순위에 대한 항의는 늦어도 그 경기 순위의 잠정 발표 후 30분 이내에 정해진 금액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5. 주최자가 공식 결과를 사전 통보대로 게시할 수 없는 경우 ~~순위 관련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표할 자세한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6. 심사위원회는 항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누구의 진술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13조 항소

제13.2조 국내 항소 기관

KARA는 KARA 회원 또는 비회원들로 항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상황에 따라 3인에서 5인(법적 자문단 제외)으로 구성된다. 다만, 해당 경기의 경기참여자, 선수, 오피셜과 어떤식 연관이 있는 자거나 항소 안건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거나 연관 있는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13.3조 국내 항소 절차

1. 모든 경기 참가자는 그 국적에 관계 없이 심사위원회가 선고한 벌칙 또는 결정에 대하여, KARA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항소를 하기

제13조 항소

제13.2조 국내 항소 기관

KARA는 KARA 회원 또는 비회원들로 항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상황에 따라 3인에서 5인(법적 자문단 제외)으로 구성된다. 다만, 해당 경기의 경기참여자, 선수, 오피셜과 ~~어떤식~~ 연관이 있는 자거나 항소 안건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거나 연관 있는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13.3조 국내 항소 절차

1. 모든 경기 참가자는 그 국적에 관계 없이 심사위원회가 선고한 벌칙 또는 결정에 대하여, KARA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 발표 후 1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항소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을 통보해야 하고 항소 보증금 일부(100만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의 시행

제14.4조 본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해서는, 결정 발표 후 1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대회 사무국 또는** 심사위원회에 항소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을 통보해야 하고 항소 보증금 일부(100만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의 시행

제14.4조 본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